

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4-122
----------	--------

제출년월일: 2024. 9. .

제출자: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

1. 제안이유

민선8기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정원 반영을 위한 정원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일반직 직급별 정원 조정에 따른 [별표 3] 개정
 - (일반직) 본청 4급 6명 → 8명 (+2명)
 - (일반직) 본청 5급 37명 → 39명 (+2명)
 - (일반직) 6급이하 계 1,373명 → 1,369명 (△4명)

3. 주요 토의과제

없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

나. 예산조치: 비용추계서 첨부

다. 합 의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타사항

- 1) 입법예고: 2024. 9. 12. ~ 2024. 9. 18.(제출된 의견 없음)
- 2) 감사담당관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: 해당없음
- 3) 새마포담당관의 행정규제심사 검토 결과: 해당없음
- 4) 가족행복지원과의 자치법규 성별영향평가 결과: 해당없음

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3]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(제4조 관련)

기관별 직급별	총 계	본청	구의회 사무국	보건소	동
총 계	1,457	1,457			
정무직	1	1			
일반직 계	1,446	1,446			
3급	1	1			
4급	10	8	1	1	
5급	65	39	1	9	16
6급 이하 계	1,369	1,369			
전문경력관 계	1	1			
별정직 계	9	9			
5급 상당	2	1	1		
6급 상당 이하 계	7	7			
연구직 계	1	1			

신 · 구조문대비표

[별표 3]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(제4조 관련)

현 행						개 정 안					
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(제4조 관련)						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(제4조 관련)					
기관별 직급별	총 계	본청	구의회 사무국	보건소	동	기관별 직급별	총 계	본청	구의회 사무국	보건소	동
총 계	1,457	1,457				총 계	1,457	1,457			
정무직	1	1				정무직	1	1			
일반직 계	1,446	1,446				일반직 계	1,446	1,446			
3급	1	1				3급	1	1			
4급	8	6	1	1		4급	10	8	1	1	
5급	63	37	1	9	16	5급	65	39	1	9	16
6급 이하 계	1,373	1,373				6급 이하 계	1,369	1,369			
전문경력관 계	1	1				전문경력관 계	1	1			
별정직 계	9	9				별정직 계	9	9			
5급 상당	2	1	1			5급 상당	2	1	1		
6급 상당 이하 계	7	7				6급 상당 이하 계	7	7			
연구직 계	1	1				연구직 계	1	1			

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

1. 비용추계 요약

가.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

- (1) 발생요인: 2국 2과 신설에 따른 인건비 증액
- (2) 관련조문: [별표 3]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

2. 비용추계의 전제

- 가. 행정안전부 2025년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예산 운용
- 나. 2024년 직급별 연봉 기준으로 인건비 산출

3. 비용추계의 결과

가. 총 계(누계): 791,104천원

- 4급 연봉상한액: 98,431천원, 5급 연봉상한액: 87,181천원
- 7급 연봉: 55,554천원

나. 연도별 비용 추계

(단위: 천원)

구분 \ 연도	1차년도 (2025년)	2차년도 (2026년)	3차년도 (2027년)	4차년도 (2028년)	5차년도 (2029년)	합계
세 출 (인건비)	149,008	153,478	158,083	162,825	167,710	791,104
인상률 (전년대비)	3%	3%	3%	3%	3%	-

※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참고 / 인상률: 2025년 인상률 반영

4. 재원조달 방안: 전액 구비

5. 추가의견: 비용추계의 세부세출은 추후 변경될 수 있음

6. 작성자: 행정지원국 행정지원과 이상은(☎8213)